

합병종료보고 공고

주식회사 네오위즈(이하 "당사")는 2020년 10월 23일 개최된 당사의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(소규모합병)에서 주식회사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 및 주식회사 네오위즈아이엔에스와의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각 법인은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종료보고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본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
-다 음-

1. 합병 내용

가. 합병 당사회사

- 존속회사: 주식회사 네오위즈
- 소멸회사: 주식회사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, 주식회사 네오위즈아이엔에스

나. 합병비율

- 주식회사 네오위즈(합병회사) : 주식회사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(피합병회사) = 1 : 0.0202852
- 주식회사 네오위즈(합병회사) : 주식회사 네오위즈아이엔에스(피합병회사) = 1 : 0.0961520

2. 합병 진행 경과

2020년 9월 14일: 합병 이사회 결의
2020년 9월 18일: 합병계약 체결
2020년 10월 23일: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
2020년 10월 26일: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
2020년 11월 26일: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
2020년 11월 30일: 합병기일
2020년 12월 1일: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
2020년 12월 2일: 합병등기 신청일

3. 채권자 이의제출: 당사와 주식회사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, 주식회사 네오위즈아이엔에스의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음.

4. 기타: 당사는 합병 등기와 동시에 주식회사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, 주식회사 네오위즈아이엔에스의 자산,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게 됨.

2020년 12월 1일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

주식회사 네오위즈 대표이사 문 지 수